붙임

# 입법형식 예시 안내 (입법 불요 또는 하위법령 등)

※ 안내 : “법령안 입법형식 체크리스트”에서 하위법령 입법 가능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, 세부 규정별로 하위법령 입법이 가능한 경우 등을 예시하여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.

* 입법형식란의 ‘하위법령 등’은 대통령령, 총리령, 부령 외에 예산조치 또는 고시 · 훈령 · 예규 · 지침 등의 행정규칙과 자치법규도 포함될 수 있으며, 그중 어떤 형식으로 추진할지는 사안별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.

| 검 토 항 목 | 입법형식 |
|---|---|
| **Ⅰ. 총칙** | |
| **1 정의 규정** | |
| ◇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법률에 규정된 용어를 정의하는 경우 | ☐ 하위법령 등 |
| ◇ 상위 법률에서 사용되지 않은 용어를 하위법령에서 정의하는 경우 | ☐ 하위법령 등 |
| **2 국가 등의 책무 · 책임 등에 관한 규정** | |
| ◇ 권고적 사항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선언적 · 추상적 책무를 규정하는 경우 | ☐ 하위법령 등 |
| **3 적용 범위 규정** | |
| ◇ 모법 조항 전체를 유기적 · 체계적으로 살펴보아 그 대강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적용 범위를 명시하는 경우 | ☐ 하위법령 등 |
| **Ⅱ. 실체 규정** | |
| **1 적용 범위 규정** | |
| ◇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* 외에 수립 · 변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<br>* 수립권자, 수립사항, 수립시기 · 주기 및 주요 수립절차 등 | ☐ 하위법령 등 |
| **2 인허가 등 (허가, 특허, 인가 및 등록)** | |
| ◇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이 아닌 내용의 신청서의 양식과 첨부서류에 대해 규정하는 경우 | ☐ 하위법령 등 |
| ◇ 허가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<br>* 허가증 대여 금지, 벌칙 등 의무를 부과하거나 제재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로 한정 | ☐ 하위법령 등 |
| ◇ 법률에서 정한 상 · 하한 위임규정에 따라 인허가 등의 유효기간 또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규정하는 경우 | ☐ 하위법령 등 |
| **3 신고** | |
| ◇ 법률에서 정한 상 · 하한 위임규정에 따라 신고의 유효기간 또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규정 하는 경우 | ☐ 하위법령 등 |

## 4 지정

◇ 지원 · 육성 대상의 선정을 위한 지정의 근거를 규정하는 경우 ☐ 하위법령 등

※참고: 현행 지정 제도는 1)기존 인허가나 특허로서의 지정, 2)행정업무의 부여를 위한 지정, 3)지원 · 육성 대상의 선정을 위한 지정, 4)규제 대상 선정을 위한 지정 등으로 구분됨

## 5 인허가 등의 의제

◇ 인허가 등의 의제 기준, 절차 및 효과 등에 대하여 「행정기본법」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정하는 경우 ☐ 입법 불요

* 「행정기본법」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 적용 가능, 별도 법률 규정 불요

◇ 인허가 등의 의제 관련 협의 · 조정 및 행정청 상호 간의 통지에 대하여 「행정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정하는 경우 ☐ 입법 불요

## 6 과징금

◇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규정하는 경우 ☐ 하위법령 등

◇ 과징금에 대한 서면 통지, 납부기한, 수납 후 영수증 발급 등 과징금 부과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☐ 입법 불요

* 「국고금 관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적용 가능

◇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 ☐ 입법 불요

* 「행정기본법」 제29조 적용 가능

## 7 행정상 강제

◇ 행정대집행의 근거 규정 외에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 ☐ 입법 불요

* 「행정대집행법」 적용 가능, 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 외에 별도 법률 규정 불요

◇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된 절차 및 강제징수를 규정하려는 경우 ☐ 입법 불요

* 「행정기본법」 제31조 적용 가능, 별도 법률 규정 불요

## 8 보조 · 출연 · 출자 · 융자

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금전인 보조금을 규정하는 경우 ☐ 하위법령 등

*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적용 가능, 별도 법률 규정 불요

◇ 보조금에 대하여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과 동일한 내용으로 관리 · 운영하려는 경우 ☐ 입법 불요

◇ 지방자치단체의 국가 지급 보조금 전용 (당초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 후, 예산을 절감한 집행 잔액을 유사사업에 사용)을 규정하는 경우 ☐ 입법 불요

*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4항 적용 가능, 별도 법률 규정 불요

◇ 국가의 현금출자 또는 일반재산 현물출자를 규정하는 경우 ☐ 하위법령 등

* 주의: 국가의 출연은 법률에 근거 필요(「국가재정법」 제12조)

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금융회사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통하여 사업자의 자금 확보를 도와주는 융자를 규정하는 경우 ☐ 하위법령 등

## 9 국공유재산의 관리 · 처분

◇ 국공유재산에 대하여
「국유재산법」(「국유재산특례제한법」 포함)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의 규정과
동일한 내용으로 관리 · 처분하려는 경우 ☐ 입법 불요

* 국공유재산의 관리 · 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'법률'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
「국유재산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적용

## 10 재정 · 회계 제도

◇ 국가의 일반회계*에 대하여 「국가재정법」, 「국가회계법」의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정하는 경우 ☐ 입법 불요

* 국가의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「국가재정법」, 「국가회계법」 적용, 별도 법률 규정 불요

◇ 공공기관의 재정 · 회계에 관하여
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정하는 경우 ☐ 입법 불요

* 공공기관의 재정 · 회계에 관하여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적용, 별도 법률 규정 불요

## 11 기금

◇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절차,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를 규정하는 경우 ☐ 입법 불요

* 「국가재정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적용, 별도 법률 규정 불요

◇ 기금의 회계연도 및 회계방식을 규정하는 경우 ☐ 입법 불요

* 「국가재정법」 및 「국가회계법」,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지방회계법」 적용, 별도 법률 규정 불요

## 12 위원회

◇ 심의 절차가 임의적이고 위원회 결정 · 판단에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☐ 하위법령 등

◇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, 위원의 자격(결격사유 제외) 등을 규정하는 경우 ☐ 하위법령 등

◇ 자문위원회의 존속기간을 규정하는 경우 ☐ 하위법령 등

◇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수당 · 여비 등을 지급하는 근거를 규정하는 경우 ☐ 하위법령 등

*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·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라 수당지급 가능, 별도 규정 불요

## 13 특수법인

◇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적용되는
법인의 정관 기재사항, 이사회와 임원의 임기, 예산회계 및 재정에 대하여
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정하는 경우 ☐ 입법 불요

*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과 동일한 내용의 경우 별도 법률 규정 불요

## 14 행정지도

◇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행정지도에 대하여
「행정절차법」의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정하는 경우 ☐ 입법 불요

## 15 공법상 계약

◇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법상 계약을 규정하는 경우 ☐ 입법 불요

* 「행정기본법」 제27조 적용 가능, 별도 법률 규정 불요

## 16 지방자치제도

◇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☐ 조례

*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할 사항을 하위법령 등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없음

## 17 포상금

◇ 행정에 도움을 준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인 포상금을 규정하는 경우 ☐ 하위법령 등

◇ 포상금 부당수급자에 대한 지급결정 취소 및 반환 의무를 규정하는 경우 ☐ 입법 불요

*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적용 가능

◇ 포상금 반환명령 불이행시 강제징수 및 가산금의 부과 근거를 규정하는 경우 ☐ 입법 불요

*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적용 가능

## 18 시스템 구축

◇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보유 중인 단순 행정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· 운영하는 경우 ☐ 하위법령 등

## 19 관계기관 협조

◇ 「행정절차법」상 행정응원으로서 관계기관 간 협조를 규정하는 경우 ☐ 하위법령 등

## 20 시범사업의 실시

◇ 국민의 안전 · 생명과 무관한 사업에 있어 본격적인 사업 시행 전에 시범사업 실시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는 경우 ☐ 하위법령 등

◇ 시범사업 참여자에게 인센티브(수수료 감면 등)를 제공하는 경우 ☐ 하위법령 등

# Ⅲ. 보칙 규정

## 1 수수료 (사용료 포함)

◇ 이용에 강제성이 없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수수료를 규정하는 경우 ☐ 하위법령 등

* 「행정기본법」 제35제1항에 따라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부과 가능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56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징수가 가능, 별도 법률 규정 불요

◇ 공공시설 및 재산 등의 사용료를 규정하는 경우 ☐ 입법 불요

* 「행정기본법」 제35조제2항 적용 가능, 별도 법률 규정 불요

## 2 출입검사와 질문

◇ 출입검사 · 질문을 하는 자의 증표 제시, 검사를 위한 물품 수거 시 보상 등에 관하여 「행정조사기본법」의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정하는 경우 ☐ 입법 불요

* 「행정조사기본법」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2항 등 적용 가능

## 3 보고의무

◇ 행정기관이 소속 하급행정기관이나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를 규정하는 경우 ☐ 하위법령 등

* 주의: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장에 대한 보고는 원칙적으로 규정하지 않고, 필요시 사무의 집행 결과만을 알리는 사후 통보 또는 자료 제출 등으로 규정

## 4 청문

◇ 청문 실시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「행정절차법」의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정하는 경우 ☐ 입법 불요

* 「행정절차법」 제22조 적용 가능

## 5 권한의 위임 · 위탁

◇ 상위 법률에 근거한 권한의 위임 ·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는 경우 ☐ 하위법령 등

◇ 상위 법률에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가 있고, 민간위탁의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 ☐ 하위법령 등

◇ 법률에 따른 시 · 도지사의 권한 등을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또는 관련 법인에 각각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 ☐ 조례 · 규칙

*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 적용 가능, 별도 법률 규정 불요

◇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재위임 · 재위탁에 대하여 정하는 경우 ☐ 조례 · 규칙

*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 적용 가능, 별도 법률 규정 불요

◇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위임사무의 재위임 · 재위탁에 대하여 정하는 경우 ☐ 규칙

*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4조 적용 가능, 별도 법률 규정 불요

## 6 직무대리

◇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직무대리에 관하여 「직무대리규정」의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정하는 경우 ☐ 입법 불요

* 「직무대리규정」 적용 가능, 별도 법령 규정 불요

◇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직무대리에 관하여 「직무대리규정」의 규정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☐ 하위법령 등

* 「직무대리규정」은 중앙행정기관등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다른 '법령'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 따르도록 규정함.

## 7 개인정보의 처리

◇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근거를 정하는 경우 ☐ 법률 또는 대통령령

*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의2에 따라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가 있어야 함.

◇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 외)의 처리 근거에 대하여 정하는 경우 ☐ 하위법령 등

*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함.
*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이용하여 처리할 사무가 과태료 부과 · 징수 사무인 경우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적용 가능, 별도의 법령 규정 불요

## 8 공표

◇ 제재적 성격의 의무위반사실 등 공표 절차에 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0조의3의 공통 절차 외에 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 ☐ 하위법령 등

* 공통 절차의 경우 「행정절차법」 제40조의3 적용 가능, 별도의 법령 규정 불요

## 9 행정쟁송

◇ 일반적인 행정소송에 대하여 정하는 경우 ☐ 입법 불요

* 일반적인 행정소송에 관하여는 「행정소송법」 적용 가능, 별도 법률 규정 불요

◇ 일반적인 행정심판에 대하여 정하는 경우 ☐ 입법 불요

* 일반적인 행정심판에 관하여는 「행정심판법」 적용 가능, 별도 법률 규정 불요

◇ 처분에 대한 일반적인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하는 경우 ☐ 입법 불요

* 일반적인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 적용 가능, 별도 법률 규정 불요

## 10 손해배상

◇ 일반적인 손해배상에 대하여 규정하는 경우 ☐ 입법 불요

* 일반적인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「민법」 또는 「국가배상법」 적용 가능, 별도 법률 규정 불요

## 11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

◇ 법인 중 공공기관,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벌칙(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, 수뢰 등) 적용 시 일반적인 공무원 의제에 대하여 정하는 경우 ☐ 입법 불요

*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공기업법」 적용 가능, 별도 법률 규정 불요

# Ⅳ. 벌칙 규정

## 1 행정질서벌 (과태료)

◇ 과태료의 부과 · 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대하여 정하는 경우 ☐ 입법 불요

*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적용, 별도 법령 규정 불요